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 기 덕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1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현행 조례에서는 주거환경 개선구역과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등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까지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에서 별도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용 대상지역에 대한

조례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의 조문 체계를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상 혼선을 해소할 필요성에 따라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에서 별도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현행 제6조제5항), 현행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에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을 추가하고 해당 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안 제6조제1항제3호) 것입니다.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